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ustoms Drawback Systems in Korea and China

라공우(Kong-Woo La)

경인여자대학 무역과 부교수(제1저자)

이선표(Seon-Pyo Lee)

경인여자대학 세무회계과 부교수(제2저자)

홍길종(Gil-Jong Hong)

경인여자대학 산학단 선임연구인력(제3저자)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선행연구 검토 및 한중 관세환급제도 | 참고문헌 |
| III. 관세환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Abstract |
| IV.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언 | |

국문초록

관세는 국가재정수입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관세 환급은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2010년 현재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크므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중국의 관세제도, 즉 관세환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 관련 규정은 다소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10년 현재 한국의 경우 관세환급은 4조176억6백 만원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7328억위안에 달해 금액으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주제어 : 관세환급, 중국관세제도, 한국관세제도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09-32A-B00114)

I. 서론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0년에 1,884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한편,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9년 대일 무역적자가 360억 달러에 달했으나 대중 무역에서는 4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은 매우 중요한 교역상대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교역규모에 있어서도 1992년 기준으로 미국(364억 달러), 일본(311억 달러), 중국(64억 달러) 순이었지만, 2010년 기준으로 중국(1884억 달러), 미국(924억 달러), 일본(902억 달러)순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 수출국(1168억 달러)이자 제1위의 수입국(716억 달러)이다.¹⁾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커지면서 중국의 관세제도, 특히 중국과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경영합리화측면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관세감면은 특정 물품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관세의 납부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환급은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다.²⁾

2010년 관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환급은 4조176억6백만원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 3조2344억86백만원에 비해 24%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관세환급이 급상승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환율의 급상승으로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서 환급금액이 증가했고, 또한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의 세율이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도 2010년 관세환급은 7328억 위안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 6485억 위안에 비해 13%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위주 수출정책으로 대외교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규모가 가장 큰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제도와 현황에 대해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국의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라공우·강진욱·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 p.85.

2)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한국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는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에 대한 수입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한국의 관세환급제도와 비교하여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양국의 교역추세에 맞는 관세환급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한중 관세환급제도

1. 선행연구의 검토

한국의 관세환급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측면에서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관세환급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자료접근의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의 연구도 중국의 관세법을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단순하게 해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채상(2009)은 중국이 WTO 가입 후 관세부분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점을 찾고 분석하여 관세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중국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양(2010)은 중국의 현행 수출입통관에 관한 법률과 세관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방대한 중국영토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선진 통관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당위성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최근 개정되었거나 새롭게 제정된 중국 해관³⁾ 관련법을 중심으로 관세관법의 주요내용과 한국 관세법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박점규(2008)는 한국의 관세환급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미국과 일본의 관세환급과 비교하면서 제시하였다.

한상현(2001)은 대중국 무역거래동향과 향후 대중국 수출여건을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현행 중국의 통관 및 관세제도의 특성 분석을 통해 대중국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하정미(2009)는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실무자적인 접근을 하였으며, 환급실적 및 환급요류사례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3) 중국법상 해관은 한국법상 세관에 해당되는 부서이다. 양국의 관세환급제도를 비교분석한 연구이므로 '해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의 환급포기와 과소 환급 등과 같은 경우가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에 대해 각국의 관점에서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진 한중 교역규모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중국 해관 관련법에 나타난 관세환급과 한국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을 비교 분석하고 양국의 관세환급 현황을 통해 관세환급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표 1> 관세환급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구분	연구목적 및 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WTO체제하의 중국 관세제도에 관한 연구(관세인하를 중심으로) - 연구자 : 채상(2009) - 문헌조사 - 연구목적 : 중국의 관세인하가 산업보호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관세인하방향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해관통계, 국제은행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의 관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타국의 사례를 이용하여 중국 실정에 합당한 방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중국 수출입 통관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유양(2010.6) - 문헌조사 - 연구목적 : 중국의 현행 수출입통관에 관한 법률과 세관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방대한 중국영토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선진 통관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그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수출입통관절차와 한중 통관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박점규(2008.12) - 문헌조사 - 연구목적 : 세계 각국이 수출 증진책으로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실태와 개편방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문헌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방안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중국의 통관 및 관세제도의 문제점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책 - 연구자 : 한상현(2001) - 문헌조사 - 연구목적 : 중국의 통관 및 관세제도의 특성과 동향을 분석하여 대중국 수출기업의 원활한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대응책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통관 및 관세제도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국내 대중국 수출기업들이 원활한 상품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자 : 하정미(2009) - 문헌조사 및 사례분석 - 연구목적 : 한국의 관세환급의 복잡성을 분석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환급제도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

구분	연구목적 및 방법	주요 연구내용
	방안을 제시	
본 연구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제도 비교분석 (최신법령을 중심으로) - 제도조사 및 문헌조사	- 중국의 해관법, 수출입관세조례, 중국조세징수법과 한국 관세법규와의 비교분석

2. 한국의 관세환급

(1) 관세법상 환급

관세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물품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 등을 과오납 하였거나 수입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등과 같이 관세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미 납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제46조)과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제106조)이 있다.⁴⁾ 과오납 환급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는 납부한 관세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하였을 때 그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 과다납부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오류사유로는 납부액 계산 착오, 관세율 적용 착오 및 관세 과세가격 평가 오류 등이 있다. 또한 무역거래에서 계약내용과 상이한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조세를 되돌려주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이 있으며, 이들은 납세의무의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환급특례법상 환급

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부과납부된 관세 등을 수출하였을 때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른 국경세 조정 목적과 수출물품과 관련한 소비세를 환급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수출지원 목적 등이 있다.⁵⁾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관세환급 건수는 2006년 이후 매년 30만 건을 초과하고 있으며, 금액은 2006년에 2조 4천억원 정도에서 2010년에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세관 중에서 서울본부가 환급건수의 51%, 환

4) 과오납 환급 및 계약상이 환급에 관하여는 교토협약 규범 4.18 내지 4.24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관세와 제세를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WCO, 1999a, pp.69-71).

5) 정재완,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관세학회지 제1권 제2호, 2000, pp.3-4.

금액의 5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부분이 서울지역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한국 관세환급제도의 운영현황

관세환급제도는 환급제도와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환급제도는 개별환급제도와 정액환급제도로 크게 구분하고, 개별환급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지급제한제도, 환급에 갈음하는 세율인하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 등이 있으며,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와 분할증명제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27만 건)와 분할증명제도(25만 건)를 관세환급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기준).

<표 2> 연도별, 세관별 관세환급 건수 및 금액

(단위 : 억원)

연도 세관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구성비율 (%)
서울본부	건수	174,020	165,811	163,855	151,141	155,346	1,005,749	51.64%
	환급액	12,175	12,712	14,461	18,559	22,021	90,892	52.38%
인천본부	건수	47,303	45,978	50,891	48,300	51,566	293,338	15.06%
	환급액	4,147	4,103	4,983	4,669	6,010	28,117	16.20%
부산본부	건수	41,941	46,561	53,182	56,825	57,984	297,923	15.30%
	환급액	2,124	2,044	2,738	2,889	3,650	15,588	8.98%
인천공항	건수	5,478	9,812	13,136	14,845	16,337	59,608	3.06%
	환급액	140	276	355	521	719	2,010	1.16%
대구본부	건수	42,031	39,994	42,967	41,716	42,880	252,098	12.94%
	환급액	5,242	4,690	5,038	5,097	6,945	33,171	19.12%
광주본부	건수	6,356	6,349	6,385	6,467	6,526	38,849	1.99%
	환급액	603	536	589	610	931	3,742	2.16%
합 계	건수	317,129	314,505	330,416	319,294	330,639	1,947,565	100.00%
	환급액	24,431	24,361	28,165	32,345	40,176	173,518	100.00%

자료 : 관세청 내부자료

(4) 관세환급의 절차

환급신청권자(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본사 또는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면 해당 세관은 원칙적으로 수출입신고필증의 유무 등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하여 환급금지급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며 환급금의 정확여부는 환급 후 심사한다.

정액환급제도는 복잡한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출 사실만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최근 6개월 이상 기간 동안의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HS 품목 및 규격별로 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제조자에 한함)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수출 사실만 확인되면 HS 10단위별로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최근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3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 등에 대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성실업체는 일정기간(분기)별로 수입하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각 분기 익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같은 기간 동안 개별환급에 의한 환급신청도 지급을 보류하여 각 분기 익월 15일까지 일괄납부액과 지급 보류한 환급액을 정산한 후 차액만큼 환급 또는 징수하는 제도이다.

<표 3> 관세환급제도의 요약

구분	제도 개요	대상
개별환급	수출면장과 소요량계산서 및 수입관세 서류에 의거 소요원재료별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	8,101개 업체
사후정산제도	원재료 수입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입시 6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관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다가 동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수출 후 결정되는 환급금과 상계·정산	225개 업체
정액환급(간이정액)	관세청장이 환급액을 미리 산출하여 고시한 정액환급율표에 의해 환급 -평균개념에 의한 환급액 산정으로 개별업체 입장에서 과다·과소 환급이 필요적으로 발생 -연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적용	2,815개 품목 10,118개 업체
개별환급지급제한	일정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제한 -수출물품에 대한 국산원재료 사용촉진 및 국내 산업 보호	덤핑방지·상계·보복관세대상 물품 환급제한
환급특별세율제도	기본관세율에서 수출상당비율을 인하하고 내수용으로 사용될 비율만을 수입시 징수 - 주로 수출용에 제공하는 수입원재료	지정품목 없음
평균세액	한 종류의 원재료도 규격이 다양해지면 환급액의 산출이 매우 복잡하	24개 업체

구분	제도 개요	대상
증명제도	계 되므로 1개월 단위로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한 수출용원재료를 세 번 부호(HS 10단위)별로 세부규격을 무시하고 통합하여 평균한 세액을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이용여부는 업체가 임의선택)	107개 품목 1,527건 발급
기초원재료 납세증명 제도	기초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중간 원재료를 제조하여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Local 공급하는 경우 당해 중간원재료에 포함되어 전가하는 관세 등을 계산하여 증명하는 제도	269,796건 발급
분할증명 제도	수입·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제조·가공 없이 수입·구매한 상태 그대로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량에 대한 관세 등을 분할하여 증명하는 제도	252,336건 발급 (수입분증발급 197,896건)

자료 : 재정기획부(관세심의관실), 2005, 관세업무현황.

3. 중국의 관세환급

(1) 예관법상 환급

중국 과세당국은 증치세를 활용하여 과열된 경기를 조절하고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출재화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일정기업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법 및 수출재화에 대한 환급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 수출면세환급정책을 실시하는 과정 중 급격한 수출환급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수입이 대량으로 유실되는 사태를 초래하였으며, 수출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이를 편취·사취하는 현상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과정 중에 형성된 정책이다.

중국은 1985년 3월에 국무원이 '수출입화물이 징수, 환급 및 증치세에 관한 규정'을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1985년 4월 1일부터 수출입물품의 환급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2년 1월 1일부터 중국정부는 생산형 수출기업이 스스로 수출하거나 위탁 수출한 화물에 대해 면세, 상계, 환급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

중국에서는 2004년부터 증치세의 환급율이 17%, 13%, 11%, 8%, 5% 5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평균 12%로 채택하였다(중국의 증치세가 17%이다). 그리고 2006년 9월 14일 중국정부(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는 다시 한 번 수출 환급율에 대해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규정은 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국가 비준을 받은 수출경영권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수출이 허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또한 원유, 설탕 등과 같은 일부 재화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억제를 위해 영세율이 아닌

기존세율을 적용하고 국내매출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증치세를 과세하는 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표 4> 수출재화에 대한 면세·환급 기본정책

구분	수출재화 면세 및 환급	수출재화 면세 및 비환급	수출재화 비면세 및 환급
매출세액	면세(免稅) 즉, 비과세	면세(免稅) 즉, 비과세	비면세(不免税) 즉, 과세
매입세액	환급(退稅)	비환급(不退稅)	비환급(不退稅)
대상기업	① 수출경영권을 가진 생산기업의 재화수출 또는 생산기업의 위탁수출 ② 수출경영권이 있는 대외무역기업의 수출재화 ③ 규정에 따른 특별허가기업의 면세환급	① 소규모납세자의 재화수출 ② 해외에서 위탁가공 받아 재수출하는 재화 ③ 피입약품 등, 중고도서, 담배, 군용물품 등의 재화	① 수출경영권이 없는 기업의 수출재화 ② 수출금재재화, 천연우황, 사향, 구리 및 동합금, 백금, 원유, 목재 등

자료 : 신재열, 「신중국세법해설」, 도서출판 어울림, 2010, p.694. 재인용

그리고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환급율이 증대한 것은 기술, 일부 IT 제품 및 생물의약제품 등 국가산업정책상 수출을 장려하는 하이테크제품에 대한 환급율은 13%에서 17%로, 일부 농산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한 환급율은 5% 또는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철강세는 11%에서 8%로, 일부목재제품은 13%에서 11%로, 도자기, 부분 완제품, 시멘트, 유리 등은 13%에서 8%로, 일부 유색금속재료는 13%에서 5%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

<표 5> 주된 환급율의 조정

품 목	수출환급율
▶ 전자제품 553개 품목을 상향조정(재세[2008]177호) ① 항공관성내비게이션, 자이로스코프, 이온방사선측정기, 핵원자로 등 ② 오토바이, 재봉틀, 전자도재 등	17%(종전 13%, 14%) 14%(종전 13%, 14%)
▶ 방직품 및 의류의 품목을 상향조정(재세[2008]138호) ① 방직품 및 의류 ② 완구 ③ 가구	14%(종전 13%) 14%(종전 11%) 11~13%(종전 9~11%)
▶ 고무제품, 임목제품 등의 상향조정(재세[2008]144호) ① 일부 고무제품, 임목제품	9%(종전 5%)

품 목	수출환급율
② 일부 모형, 유리 식기	11%(중전 5%)
③ 일부 수산제품	13%(중전 5%)
④ 가방, 신, 모자, 우산, 가구, 침구, 조명 용구, 시계	13%(중전 11%)
⑤ 일부 화공제품, 석재, 유색금속, 가공원료 등	11%, 13%(중전 5%, 9%)
⑥ 일부 기전제품	11~14%(중전 9~13%)

자료 : 中國注冊會計師協會, 「稅法」, 經濟科學出版社, 2008, p.62.

<표 6> UR협정 타결 이후 관세인하의 추이

(단위 : %)

구 분	선진국	개발도상국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국가	WTO 모든 회원국
UR협정 타결 이전	6.3	20.5	8.6	9.9
UR협정 타결 이후	3.8	14.4	6.0	6.5
관세인하 폭	40.3	29.7	30.2	34.3

자료: Fu Xu(2005), "WTO Rules and China's Trade Policies", Tianjin Nankai University Press, p.282.

(2) 제재적인 성격의 관세환급제도 운용

중국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관세법 위반업체와 특별히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먼저 관세를 징수한 후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관세의 환급이라 하면 과오납 환급을 말하며, 그냥 환급이라고 하면 수입과정에 징수하는 내국세의 환급을 말한다.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① 세관의 징수착오로 인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것, ② 세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면제한 수입화물이 세금을 완납한 후 과소 하역된 사실이 발견되어 세관의 검사를 하여 확인한 것, ③ 이미 수출관세를 징수한 화물이 사정이 있어 수출선적을 하지 못하고 신고취하를 신청하여 세관의 검사를 거쳐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3) 관세환급의 절차

중국에서 관세환급은 수출입화물의 수취인·발송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납부고지서 발급일 부터 1년 내에 ① 세관의 징수오류로 과다 납부한 경우, ② 세관이 수입화물의 검사를 면제하여 세금을 완납한 후, 과소 하역한 사실이 발견되어 세관의 심사를 거쳐 인정된 경우,

③ 수출관세를 징수한 화물이 선적하여 수출하기 이전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의 조사 결과 사실인 경우, ④ 특정감면세의 수출입화물로 사전에 감면세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처리한 감면세증명서의 미제출로 세관의 세금 징수 후, 세관의 심사결과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화물수출입 후 3개월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함), ⑤ 수출입화물을 규정에 따라 징수한 후, 해관총서의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⑥ 수출입화물을 규정에 따라 징수한 후, 특별히 환급을 허락한 경우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원납세자료와 함께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세관은 환급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거나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① 환급신청서, ② 환급신청보고서, ③ 수출입관세·대리징수세 전용납부서, ④ 수출입화물신고서, ⑤ 세관이 제출을 요구한 기타 증명서 등이며, 이외에도 ① 명령에 따라 특별히 환급이 허가된 경우에는 해관총서 또는 재정부서가 하달한 환급동의서, ② 수출입상품세칙 또는 과세가격에 대한 세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재심결정서, ③ 수입화물의 세금 징수 후 과소 하역된 경우에는 상품검사부서가 발급한 검사보고서, ④ 특별감면세 수출입화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 증명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받은 후, 환급서<收入退還書>를 발급하여 원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근거로 대체 환불하게 한다.⁶⁾

(4) 수출환급세액의 계산

① 선징수후환급(先徵后退) : 대외무역기업의 수출환급세액의 계산

대외무역기업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수출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은 면세이고, 수출 전단계까지의 매입세액은 환급율에 따라 환급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생산기업의 수출환급세액의 계산시 적용하는 면세, 공제, 환급과는 달리 수출을 국내 판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우선 납부하고, 국가자금수요·세수계획 등에 따라 환급시기를 조정하여 수출관련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② 면세(免稅), 공제(抵稅), 환급(退稅) : 생산기업의 수출환급세액의 계산

생산기업의 자체수출 또는 위탁대리수출 재화에 대한 수출환급세액은 ‘면세(免稅), 공제(抵稅), 환급(退稅)’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데, 여기서 생산기업이란 독립적으로 회계결산을 수

6) 양천호, 「알기 쉬운 중국통관제도」,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pp.792-793.

행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기관이 일반납세자로 인정한 자로서 실제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기업에 적용되는 면세, 공제, 환급에 의한 수출환급세액은 생산한 재화를 국내 내수 및 해외 수출을 함께 한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③ 수출기업의 국내 재화판매 간주

수출기업이 다음의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출세액을 국내에서 재화를 판매한 것과 같이 계산하여 징수한다.

- ㉠ 국가에서 증치세를 면세·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한 재화
- ㉡ 수출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면세·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재화
- ㉢ 수출기업이 면세·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재화
- ㉣ 수출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대리수출재화증명’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재화
- ㉤ 생산기업이 수출하나 자체생산으로 간주하는 기타 외부구입재화(4종류 특정제품 제외)

4.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방식의 차이)

중국의 경우 수출재화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한국의 영세율제도와 큰 틀은 다르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 수출경영권 등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매출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 환급을 적용해주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기업과 수출경영권을 가진 생산기업, 해외건설기업 등 일부 기업에 한하여 환급을 인정해주고 있다.

② 일부 품목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수출금지재화, 수출금지재화, 천연우황, 사향, 구리 및 동합금, 백금, 원유, 목재 등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 대하여 과세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환급적용을 배제한다.

③ 매입시 징수당한 세율과 환급세율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10% 단일세율이나 중국 증치세는 징수당한 매입세율과는 달리 별도의 환급세율을 규정하여 주요 세수조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④ 대외무역기업이 구분경리를 정확히 수행하며 재화를 국내 및 해외에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 판매재화에 대한 환급세액은 차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하는 것에 반하여, 해외수

7) 신재열, 「신중국세법해설」, 도서출판 어울림, 2010, pp.706-707.

출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우선하여 징수한 후 자금수요 등에 따라 환급시기를 조정하여 수출관련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⑤ 생산기업이 재화를 국내 및 해외에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대외무역기업과는 달리 원재료, 가공비 등이 국내 판매재화 및 해외 판매재화의 원가를 동시에 구성하게 된다. 이 경우 국내 판매재화에 대한 환급세액은 대외무역기업과 마찬가지로 차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한다. 그러나 해외수출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 공제, 환급방법을 통하여 상당히 복잡한 계산방식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외무역기업과는 달리 생산기업의 경우 국내 판매재화 및 해외 판매재화에 혼합되는 원가를 일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그 취급을 다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5.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 현황

관세환급은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인데, 관세청에 따르면 1993년 9,677억원, 1998년에 2조 2,743억원, 2009년에 3조 2,344억원, 2010년에 4조176억원으로 4조원을 초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관세환급액은 2009년 관세환급액보다 24.2% 증가하였으며, 관세환급비율도 27.45%로 과거 5년간보다 가장 높은 비율로 환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관세환급액이 급상승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환율의 급상승으로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서 환급해 주는 금액이 증가했고, 또한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의 세율이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유의 경우 관세청이 담당하는 세수의 20%에 해당하는 10조원 가량을 차지하는데, 세율이 올라가면서 환급액이 커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도 2010년 관세환급은 7328억 위안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도 6485억 위안에 비해 13%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은 확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액 비교

연도	한국(단위 : 억원)			중국(단위 : 억 위안)			
	관세 징수액①	관세 환급액②	관세 환급비율 ③ (②÷①)	관세 징수액④	관세 환급액⑤	계⑥ (④+⑤)	관세 환급비율 ⑦ (⑤÷⑥)
2005년	92,343	24,041	26.03%	4,220	3,372	7,592	44.42%
2006년	105,670	24,431	23.12%	4,967	4,285	9,252	46.31%
2007년	113,942	24,361	21.38%	6,153	5,273	11,426	46.15%
2008년	131,832	28,165	21.36%	8,155	5,568	13,723	40.57%
2009년	149,607	32,344	21.62%	7,747	6,485	14,232	45.57%
2010년	146,350	40,176	27.45%	10,528	7,328	17,856	41.04%

자료 : 관세청 내부자료, 연합뉴스 2010년4월5일 보도내용 및 www.chinatax.gov.cn 공시자료

Ⅲ. 관세환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효과

(1) 이중과세 방지

수출 등에 제공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는 배경은 관세 등이 부과된 수출용원 재료로 생산된 수출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소비된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관세환급은 이중과세 방지차원에서 타당하다. 또한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증치세법)의 경우에도 수출품의 최종 소비자가 국외이므로 과세권을 외국정부에 위임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 외화획득 행위 지원

환급특례법령에서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는 것(국내

외화판매 또는 공사)도 있고, 외국으로 수출되어도 환급대상수출로 인정하지 않는 것(무환 수출물품)도 있는 점을 볼 때에 관세환급은 외화획득행위를 지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출은 늘리고, 한편으로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외화를 증대시키는 정책이다.

(3) 국제협약 정책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SCM)에 관한 협정에 의해 수출보조금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고, 세계관세기구(WCO)의 교토협약에서도 관세환급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자국의 실정에 맞게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대다수 국가는 자국경제에 이익이 되는 수출증진을 위해 환급제도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액환급제도와 같이 환급절차의 신속성과 간소화 보다는 정확한 환급에 더 치중하고 있다.

(4) 원재료의 국산화 촉진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 후 수출하는 기간이 길면 관세납부액에 대한 자금 부담을 느껴 국산원재료를 선호하게 되고, 특히 정액환급제도를 사용하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액에 상관없이 수출물품별 평균개념에 의한 일정액을 환급하기 때문에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다.

2. 부정적 효과

(1) 과다부정 관세환급의 급증

관세환급제도는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에 따른 행정비용이 과다하여 실물확인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서면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서면관리 제도에서는 수출품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중 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되거나 국내 구매한 원재료이면 실제 수출품제조에 소요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관세환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원재료를 사실과 다르게 환급 신청한 과다부정 관세환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 과다환급의 허용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환급하는 경우, 실제로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환급을 받는 경우도 정당 환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것인지, 개별환급을 받을 것인지를 수출업체에서 임의 선택하도록 환급특례법에서 허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3) 간이정액환급신청시 수출신고와의 중복문제

수출신고서의 내용과 환급신청서의 두 건의 민원신청서식의 기재항목이 상당수 중복되어 있음에도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세관에 두 번에 걸쳐 신고 및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분리된 절차로 인해 수출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위한 별도의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만큼의 비용 및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한편,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물품의 HS10 단위 별로 전년도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원재료의 납부세액, 관세율 및 환율을 고려하여 수출금액 FOB10,000원당 환급액을 책정, 고시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수출물품일지라도 HS분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급물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HS번호로 신고로 인하여 과소,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4) 소요량확인비용 발생

소요량제도는 평균개념에 의한 소요량 책정방식인 기준소요량이 업체별로 적정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소요량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할 수 없으며, 소요량 책정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 결과,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소요량 책정 능력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과다환급이나 과소 환급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급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를 위하여 국가에서 제정하여 운용하는 소요량체계(중전의 표준소요량과 유사한 개념)의 도입 또는 새로운 정액환급제도의 운용 및 간이정액환급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관세환급 전반의 어려움

관세환급은 수입업체와 정책당국에 부대비용을 유발시키는데, 물론 일괄납부에 의한 사후정산제도 등의 도입으로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원재료 총괄관리제도 등의 실시

로 환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단순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수출업체의 환급에 따른 총비용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환급받을 때까지 기간의 금융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환급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크다고 볼 수 있다.

(6)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

제도의 다양화로 인한 운영상 복잡성이 크고, 환급대상 수출용원재료 범위의 제한적 운영으로 인해 문제가 있으며,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환급 포기발생이 많으며, 환급을 못 받거나 덜 받거나 부당환급 발생이 자주 있다. 또한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가 다르게 운영되어 동일한 물품의 수출에도 관세 등 납부유예액과 환급액이 다르게 된다. 특히, 환급금의 결정에 있어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가 축소 적용되고 있는데, 수출용원재료의 범위는 WTO 협정 등 국제협약에서도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체화되는 원재료에 전기, 에너지, 유류, 윤활유 등으로 규정하여 종전의 체화(physically incorporated)의 개념에서 소비되는 개념으로 확대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적용대상 품목과 업체의 제한적 운용, 비적용 신청시 2년간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제한, 정액환급율표의 구조상 과다환급이나 부당환급 발생, 정액환급율이 실제 환급액보다 적은 과소 환급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과소 또는 과다 환급의 발생원인은 수입시 납부세액을 확인하지 않고 환급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국산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해도 환급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수출물품의 HS만 맞으면 일률적으로 환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액관세율표의 기타물품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정액환급대상 또는 고액 환급율이 적용되는 HS로 수출신고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IV.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주요 선진국의 경우 관세환급율은 2%인 경우와 비교할 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율은 각각 27%와 41%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관세환급율이 높다는 것은 수출지원이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관세징수 후 관세환급까지의 기간에 기업의 자금부담은 금융비용을 가중시킴으로써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세환급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가령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등과 같은 대체적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세환급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원재료의 국산화를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상태에서 관세환급제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축소시키는 기본 정책방향은 환급대상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 원재료에 대한 무관세의 적용이나 중간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정책은 환급대상을 대폭 축소시켜 줄 것이므로 환급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평균관세부담액이 3% 수준 이하가 되면 수출에 대하여도 관세환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환급대상 물품을 포지티브방식으로 지정하는 체제로 관세환급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⁸⁾ 이는 대부분의 경제적 부유국가가 환급제도보다는 사전면세제도 또는 보세공장제도를 주된 제도로 이용하면서 낮은 관세율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은 관세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내국세를 제외함으로써 관세와 내국세의 납부 및 환급방식의 상이라는 이중적 처리절차로 인해 제도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해서도 일괄납부 및 정산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관의 징수착오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원칙적인 관세환급 규정을 제정하여 일관성이 있는 환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성장잠재력이 큰 중간재산업의 경우 국가가 선별적으로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되 수출지원을 위하여 선진국과 같이 수출입자유지역이나 보세공장 등과 같은 관세지원제도와 대체환급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원자재가 부족한 국가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수입중간재를 통하여 수출이 촉진될 수 있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8) 양승만, “한국의 관세정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p.175-176.

2. 경제상황에 맞는 환급제도의 운용

관세환급대상 원재료의 인정범위는 WTO와 KYOTO 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에너지, 전기, 유류 등을 포함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단용(單用) 원재료에 대하여도 보세공장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환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소요량 확인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소요량에 대한 자율통제체제를 갖추고 제3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즉,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고전적 통관대행 서비스 기능이 축소되는 관세사 등에게 전문자격사에 적합한 수출입업체의 자율법규준수도 제고기능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업무영역의 확대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여 자율소요량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업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모든 물품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상세수출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 및 환급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량확정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잠정수량신고 형태의 신고방식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별 환급금 관리제도는 환급비용이 과다 발생하므로, 업체별 1회계연도 환급금 결산관리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회계연도별 환급금 결산제도는 환급제도의 소요량산정방법 신고사항 중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을 연계하여 전년도 제품별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총납부세액을 근거로 제품 단위당 평균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해당 연도 제품수출량에 대하여 우선 환급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하는 제도이다. 제도개선의 효과는 건별 환급시 정액환급의 효과가 있으며, 국내거래시 건별로 증명하던 것이 제도이용 업체간에는 연1회 업체별 일괄증명으로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다. 자율소요량제도의 도입·시행으로 종전 업체별 평균 실제소요량제도 시행 당시에 비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이용실적이 월등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거와는 달리 제도운용의 성과가 보장된다고 하겠다. 관세징수보류액과 환급금지급 보류액의 사후정산에 있어 “분기 단위 정산제도”는 환급특별법의 규정(제5조 제2항)에 의거 반기 단위로 업체별 실정에 맞게 신청을 받아 월별 내지 일정기간별로 사후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중단기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중소수출업체를 위한 소요량제도의 단순화를 검토해야 한다.

3. 정액환급제도의 탄력적 운영

현행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수출금액과 HS10 단위가 환급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의 기재오류 및 허위신고로 과다환급이 발생하고 있고, 세법분류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수출신고수리 후 HS10 단위 정정이 빈번하고 기타 세법(정액환급율표 중 1,000여개가 있으며 약 30% 차지)으로 분류함에 따라 과다과소 환급으로 인한 추징 또는 환급의 발생소지가 많으므로 기타 세법을 정액환급율표상에서 제외하거나 HS10 단위의 보다 세분화 등 검토가 필요하다.⁹⁾ 그러나 HS 세분화는 장기간의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므로 오히려 현행보다 대상품목의 범위를 확대하여 HS6 단위(국제통일상품분류) 기준으로 정액환급율을 단순화하여 책정하면 품목분류오류에 따른 과다과소환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년도 개별환급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근거로 하는 정액환급을 책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법령에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 업체의 정액환급대상 품목의 확대요청에도 부응하게 되어 정액환급제도가 중소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지원제도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기초원재료는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므로 수출물품에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이 전가되어 있어 굳이 환급신청인을 생산자에 한하는 것은 환급신청인을 부당히 축소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도입취지에 알맞게 신속간소화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의 규정(제2조 제5호)에 의한 수출자가 중소기업체로서 당해 수출물품의 실제 수출자로 확인되거나 수출물품이 중소기업체의 제조물품으로 확인되면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하지만 환급절차의 간소화와 원활화는 일정한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위험 분야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부당환급에 대해 처벌규정을 개선하여 의도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당환급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만 범죄적인 부당환급의 사례가 감소할 것이다.

4. 관세율의 적정화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평균 관세율은 9.8%이며, 농산품 평균 관세율은 15.2%,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8.9%이다. 그리고 한국 관세청 자료에

9) 이상학, “정액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p.60-61.

의하면 2000년 평균 관세율은 8.8%이며, 농산품 평균 관세율은 18.3%,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7.2%이다. 또한 2007년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실제 교역량을 고려한 관세율인 가중평균관세율을 살펴보면, 중국의 대한 가중평균관세율의 경우 농산물은 24.59%, 공산품은 4.49%인 데 비해 한국의 대중 가중평균관세율은 농산물은 52.54%, 공산품은 4.62%였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2010년 발표한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시 고려요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제품에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평균 9.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FTA 협상을 마무리한 미국(3.5%) 및 EU(5.6%)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¹⁰⁾ 특히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일반 무역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관세율의 적정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 양국의 교역규모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관세환급과 관련된 여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해관법은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새롭게 해관법의 내용을 확립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만 관세행정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부정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밀수와 부정부패도 감소되어 전체적인 차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을 해 줌으로써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제품의 가격인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출지원제도이다. 즉, 국내 수출업자가 생산비용면에서 수출경쟁국의 수출업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관세환급제도가 도입되었다.

한국의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과오납 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부과납부된 관세 등을 수출하였을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해관법에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관의 징수착오로 인하여 세금의 과다 납부, 세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면제한 수입화물이 세금을 완납한 후 과소 하역된 사실이 발견되어 세관의 검사를 하여 확인한 것, 그리고 이미 수출관세를 징수한 화물이 사정

10) 연합뉴스, 2010년 8월 3일 보도자료.

이 있어 수출선적을 하지 못하고 신고취하를 신청하여 세관의 검사를 거쳐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중국의 관세환급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한국의 경우 규정에 의한 일정을 규정하여 관세환급을 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환급율을 목적에 따라 차이를 두고 환급을 하고 있으며, 관세환급의 기간에 있어서도 중국은 한국의 경우에 비해 길며, 관세환급절차에 있어서도 복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한국은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이라는 법제도하에 별도로 관세환급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 미국 및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제도와 현황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관세환급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무역 및 관세철폐 등의 확산 분위기로 관세환급제도는 무의미하겠지만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관세환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수출입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자료의 출처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여 분석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에 의해 보다 관세환급과 관련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 한국의 중국의 교역에 있어서 합리화가 있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중국통관실무, 관세청 국제협력과, 2005.
-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환급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2002.
- 김병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주요개정내용 해설, 주간 관세정보, 통권 981호, 2001.
- 나형주, 중소기업체의 수출부대비용 절감을 위한 수출신고 및 간이징액환급제도 개선, 관세청 행정분야 제안서, 2002.
- 라공우·강진욱·이선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

- 회, 제12권 제1호, 2011.
- 박점규,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양승만, 한국의 관세정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양천호, 알기 쉬운 중국통관제도,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 오규상, 현행 간이징액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월간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0.
- 이상옥, 중국 관세정책의 정치적 의미,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8권 제4호, 2007.
- 이상학, 정액 관세환급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정길, 관세환급실무,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2.
- 재정기획부(관세심의관실), 관세업무현황, 2005.
- 정재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권 제2호, 2000.
- 정재호·이명헌, 관세환급제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진평, 중국 수입통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채상, WTO체제하의 중국 관세제도에 관한 연구 -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천홍욱, 관세행정상의 수출지원대책, 월간 관세와 무역,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1.
- 하정미,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한상현, 중국의 통관 및 관세제도의 문제점과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책, 창업정보학회지 제4권 제1호, 2001.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개정 HSK 관세율표 2003,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3.
- 한국관세사회, 관세환급, 2003.
- 홍인기, 최근 중국경제와 세계화·정보화, 박영사, 2004.
- 한국무역협회,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 협상시 고려요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 中國註冊會計師協會, 稅法, 經濟科學出版社, 2008.
- Fu Xu, WTO Rules and China's Trade Policies, Tianjin Nankai University Press, 2005.
- Hailian Li,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of China's Duty-free Mechanism, Foreign Trade and Economic University, the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vol23, No.2, 2007.
- Yong Li, A Study on China's Tariff Adjustment and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Tax and

Economy, 2000.

<http://www.chinacustomsstat.com>(중국해관통계 웹 사이트)

<http://www.china-customs.com>(중국해관종합정보 웹 사이트)

<http://www.mofat.go.kr>(중국세관통계 웹 사이트)

<http://www.stats.gov.cn>(중국국가통계국 웹 사이트)

<http://www.stats.gov.cn>(한국관세청 웹 사이트)

연합뉴스 2010년 4월 5일 및 8월 3일 보도자료.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Customs Drawback Systems in
Korea and China*

Kong-Woo La** · Seon-Pyo Lee*** · Gil-Jong Hong****

The basic purpose of Customs Drawback System of the material for export goods is export support as cut a price down the export goods' price. Especially the trade volum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the greatest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in 2010. Therefore companies involved China is necessary to understand exactly for China's tariff system(duty drawback system).

Due to inconsistent policie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VAT-related provisions on exports goods of China compared with South Korea Tax System.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China-related companies. In South Korea and China, amount of customs duty drawback is very large 4.017606 billion won 732.8 billion yuan respectively. Thus, the amount of customs duty drawback is greater, a comparison of customs duty drawback in South Korea and China is very necessary on Customs Drawback System.

Key Words : Customs duty Drawback, China's tariff system, Korea's tariff system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32A-B00114)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rade, Kyungin Women's College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ax Accounting, Kyungin Women's College

**** Exclusive charge Researcher, Kyungin Women's College